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이인선
박성훈 · 박충권 · 박상웅
고동진 · 정동만 · 구자근
김도읍 · 김정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)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,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‘법인 또는 개인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은 물론 행위자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(대법원 2026. 3. 13. 선고 2025도10321 판결 등)한 바 있음.

이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, 민간 법인과는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·감독

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제70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조항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, 공공기관의 장(長)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4조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본문 중 “대표자나 법인”을 “대표자, 공공기관의 장, 법인, 공공기관”으로, “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”를 “법인,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”로, “법인 또는 개인을”을 “법인,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법인”을 “법인, 공공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대표자나 법인”을 “대표자, 공공기관의 장, 법인, 공공기관”으로, “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”를 “법인,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”로, “법인 또는 개인에게도”를 “법인,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법인”을 “법인, 공공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4조(양벌규정) ① <u>법인의 대표</u> <u>자나 법인</u>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<u>법</u> <u>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</u>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<u>법인 또는 개인을</u>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<u>법</u> <u>인 또는 개인이</u>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<u>법인의 대표자나 법인</u>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<u>법인 또는 개인의</u> <u>업무에</u>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<u>법인 또는 개인</u> <u>에게도</u>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<u>법인 또는 개</u> <u>인이</u>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</p>	<p>제74조(양벌규정) ① ----- <u>대표</u> <u>자, 공공기관의 장, 법인, 공공</u> <u>기관</u> ----- <u>법</u> <u>인,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</u> ----- ----- -- <u>법인,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</u> ----- . ----- <u>법</u> <u>인, 공공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----- <u>대표자, 공공기관의</u> <u>장, 법인, 공공기관</u> ----- ----- <u>법인, 공공기관 또는</u> <u>개인의 업무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인, 공공기관</u> <u>또는 개인에게도</u> ----- ----- . ----- <u>법인, 공공기관</u> ----- -----</p>

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
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

-----.